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58
----------	--------

제출년월일 : 2024. 11.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2024. 5. 17. 시행)으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용어와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용어를 사용하거나 관련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8개 조례를 정비함(안 제1조~제8조)

##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4. 10. 11. ~ 10. 31.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법무팀 의견]

관계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법무팀 검토의견	이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 5. 17.자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 사항을 마포구 조례 중 ‘문화재’라는 용어 및 관계 법령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 없음
참고사항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후단 중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를”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제7조(「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국가유산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현 행	부서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u>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u> 수리공사도 포함한다.</p> <p>2. ~ 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p> <p>- <u>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u> -----.</p> <p>2. ~ 4. (현행과 같음)</p>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현 행	부서 개정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및 「<u>문화재보호법</u>」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p>	<p>제3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p>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현행	부서 개정안
<p>제31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생략)</p> <p>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u>문화재</u> 등 화재, 붕괴</p> <p>4. ~ 7. (생략)</p> <p>③ (생략)</p>	<p>제31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국가유산</u> ----- -</p> <p>4. ~ 7.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부서 개정안
<p>제4조(효행 사업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효에 관한 <u>문화재</u> 및 유물자료의 수집·발굴·관리 사업</p> <p>5.·6.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효행 사업 지원)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국가유산</u> ----- -----</p> <p>5.·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부서 개정안
<p>제10조(예산 지원 등) (생략)</p> <p>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u>문화재</u>,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p>	<p>제10조(예산 지원 등) (현행과 같음)</p> <p>② ----- ----- <u>국가</u> <u>유산</u> ----- -----.</p>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현행	부서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관급공사”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p> <p>가. ~ 라. (생략)</p> <p>마. 「<u>문화재보호법</u>」에 따른 <u>문화재 수리공사</u></p> <p>바. (생략)</p> <p>2.·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국가유산 수리공사</u></p> <p>바. (현행과 같음)</p> <p>2.·3. (현행과 같음)</p>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현행	부서 개정안
<p>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p>	<p>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국가유산으로 ----- 국가유산 보호구역 ----- ----- -----.</p>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

현행	부서 개정안
<p>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p> <p>1. ~ 4. (생략)</p> <p>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p> <p>6. (생략)</p>	<p>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국가유산 -----</p> <p>6. (현행과 같음)</p>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전효빈 (☎ 3153-8372)